

<b>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규칙</b>	규정번호	3-3-10
	제정일자	2001.03.02
	개정일자	2012.04.30
	개정번호	Ver.5 총페이지 3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학칙 제43조에 의하여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중 동양미래대학교총장에 의한 학위수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학위수여요건)** 본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학위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.

1.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
2.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에 해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은 자
3. 우리 대학 학칙이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

**제3조(학위수여 절차)** ① 대상자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, 학위신청서(별첨 1), 학점인정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한다.

- ②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학위수여예정일 30일 전에 한국교육개발원에 통보한다.
- ③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학위수여 요건 충족 및 이중학위수여 여부를 확인하여 학위를 수여한다.

**제4조(학위증 서식)** 학위번호는 정규과정과 구별하여 정하고,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한다

**제5조(증명서 발급)** ① 학위수여 예정증명서, 학위증 및 학위증명서는 본 대학에서 발급할 수 있다.

- ② 학적사항 및 성적증명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.

**제6조(규칙의 개정)** 이 규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.

**부 칙**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